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미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010

발의연월일 : 2021. 12. 21.

발 의 자:윤미향・권인숙・노웅래

송옥주 • 안호영 • 양이원영

용혜인 • 윤준병 • 이수진비

임종성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이 법 또는 「출입국관리법」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용자에 대하여는 고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,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고용허가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외국인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또한 현행법령상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「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제시됨.

이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을 위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 게 한 사용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, 외국인 취 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(안 제11조제1항, 안 제11조의3·제11조의4·제2 0조제1항제3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1항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"을 "한국산업인력공단 또 는 제11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"으로 한다.

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조의3(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 인 취업교육을 전문적·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업교육 기관(이하 "외국인 취업교육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·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의4(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
- 4. 임직원이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
- 5.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
- 6.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2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3의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6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안 제11조(외국인 취업교육) ① 외국 제11조(외국인 취업교육) ① ----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---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제11 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 조의3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 한 사항을 주지(周知)시키기 위 하여 실시하는 교육(이하 "외 국인 취업교육"이라 한다)을 받아야 한다. ② • ③ (생략) ② • ③ (현행과 같음) 제11조의3(외국인 취업교육기관 <신 설> 의 지정 등) ① 고용노동부장 관은 외국인 취업교육을 전문 적·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외국인 취업교육기관(이하 "외국인 취업교육기관"이라 한 다)을 지정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·시설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 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취업교육기 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. 제11조의4(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의 지정취소 등) ① 고용노동 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취소,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2.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경우
 - 3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
 - 4. 임직원이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받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
 - 5.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

제20조(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 제20조(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 한)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 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 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 <신 설>

4. (생략)

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 는 경우

6.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 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은 지 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 과하지 아니하면 제11조의3제2 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 관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 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কৃ**।** ① 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 3의2.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6 7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 은 자 4. (현행과 같음)

(2) (생 탁)	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